

# 고용촉진장려금 안내

\*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, 시행규칙 제44조, 45조, 고시 -고용창출장려금·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

\* 법령 등 개정 시 개정 안내문 등을 대구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시하므로 지원금 신청 시 주기적인 확인바랍니다.

## ■ 지원요건

- 취업지원 프로그램 (붙임 참조)을 이수\*하고 구직등록\*을 한 구직자(실업자)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지원
  - 구직자가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
(단, 중증장애인·한부모여성가장은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 1개월 초과 시 가능)  
(고용24(<http://www.work24.go.kr>) → 인재찾기 → 취업희망플)
  - ※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의 유효기간은 프로그램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까지로 함
  - ※ 구직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장려금 대상이 됨  
(단, 취업프로그램 이수면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함)

## ● 지원 제외

(지원 제외 근로자)

-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
-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 **124만원** 미만 근로자
-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을 고용한 경우
-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(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는 제외)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
-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를 고용한 경우 등 **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근로자**

(지원 제외 사업주)

- 국가공공기관·공기업과 같이 공공성이 강하고, 예산 등으로 지원을 받는 기관
-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 등
-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- 이직 전 1년 이내 근무이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
- 이직 당시 관련 사업주(인수, 합병 등)에게 고용된 경우
- 사업주가 지원대상자 **고용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** 사업장 소속 근로자(본사, 지사 포함)를 해고나 권고사직 시킨 경우(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)
-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
- **신청기간(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)을 지나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**

## ■ 지원수준

- 1년에 720만원 지원(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720만원, 대규모기업 360만원)
  - \*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「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」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음(6개월 단위로 지급하며, 일할·월할 단위는 지급하지 않음)

## ■ 지원기간

- 1년. (단,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 장애인,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는 2년)

## ■ 지원한도

-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장려금 지급(소수점 이하 절사)

## ■ 지원절차

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(구직자) → 구직등록(구직자) → 취업희망플 에 등록된 구직자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(사업주) → 6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(사업주) → 사실관계 확인 후 장려금 지급 (고용센터)

※ 유의사항: 먼저 채용하거나 면접을 본 근로자를 사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채용하는 경우 부정수급 대상이 됨.(부정수급 처분: 장려금 반환, 2~5배 추가징수, 지급제한기간 설정, 형사처벌 등)

## ■ 제출서류

- ① 「고용촉진장려금」 지급 신청서 **【별지 제17호 서식】**
- ② 근로계약서, 신청기간동안의 급여대장 · 급여이체증
- ③ 기타 지원대상별 추가 제출서류(해당자에 한함)
  - 중증장애인: 중증장애인 확인서, 장애인등록카드, 장애증명서
  -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: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\*, 한부모가족증명서

\*가족부양 서류: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·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
## ■ 신청방법

- 고용24 홈페이지([www.work24.go.kr](http://www.work24.go.kr))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(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)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

### < 유의사항 >

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·지급받은 자는 반환, 추가징수(최고 5배), 지급제한기간 설정,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p>1.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(1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,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. 단,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.</p> <p>(2)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,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. 단,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.</p>
<p>2. 고용노동부 및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‘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’(2개월 이상 과정)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</p>
<p>3. (삭 제)</p>
<p>4.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‘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’을 마친 사람</p>
<p>5.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(1) ‘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’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. 단,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 <p>(2) ‘기술교육원 직업훈련’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</p>
<p>6.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‘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형훈련)’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. 단,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
<p>7.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‘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’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</p>
<p>8.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‘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’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. 단,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
<p>9. (삭 제)</p>
<p>10.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(1)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,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‘취업워크숍’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 <p>(2) ‘직업교육훈련(사회적응교육, 직업교육훈련, 직업능력개발훈련 등)’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</p>
<p>11.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‘취업지원프로그램(재도약프로그램)’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. 다만,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
<p>12.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‘일반고 특화과정’을 수료한 사람</p>
<p>13. (삭 제)</p>
<p>14. 지방관서별로 「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」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‘지역맞춤형 프로그램’을 수료한 사람</p>
<p>15. (삭 제)</p>
<p>16. (삭 제)</p>
<p>17.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‘청년도전 지원사업’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</p>
<p>18.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‘희망리턴패키지’ 취업지원 사업의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사람(폐업 소상공인에 한정한다)</p>
<p>19.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‘중장년 경력지원제’에 현장실습생으로 참여한 사람. 다만, 1개월 미만 참여자는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</p>